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93
----------	-------

발의연월일 : 2026. 4. 22.

발 의 자 : 구자근 · 이상휘 · 박성민
최수진 · 김선교 · 강승규
박준태 · 정점식 · 김성원
강명구 · 김도읍 · 김위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 시행예정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러닝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닝센터는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닝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이러닝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양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5.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생 략)	제20조(이러닝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러닝 전문인력의 <u>양성과</u>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사항</u>	3. ----- <u>양성</u>
<u><신 설></u>	4. <u>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u> <u>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u> <u>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u>
<u><신 설></u>	5. <u>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u> <u>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운</u> <u>영</u>
<u><신 설></u>	6.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항</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